

의안번호	제 37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6월 일 (제 381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방관서 신설 및 3교대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소방직 증원
- 기획·집행이 가능한 핵심실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직급비율)을 조정

2. 주요내용

- ① 총 정원 조정 : 2,668명 → 2,781명 (증 소방직 113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130명 → 1,243명(증113명)
 ※ 집행기관, 의회, 교원은 변동사항 없음.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 6급 +1%, 8·9급 △1%

구분	총정원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현행	1,051명	7%이내	21%이내	34%이내	35%이내	3%이상
조정	1,051명	7%이내	21%이내	35%이내	35%이내	2%이상
증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1%	변동없음	△1%

- 기능직공무원 : 7급 +1%, 10급 △1%

구분	총정원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63명	5%이내	12%이내	34%이내	32%이내	32%이상
조정	263명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상
증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1%	변동없음	변동없음	△1%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연구관 +1%, 연구사 △1%

구분	연구직			지도직		
	정원	연구관	연구사	정원	지도관	지도사
현행	136	15%이내	85%이상	24	26%이내	74%이상
조정	136	16%이내	84%이상	24	26%이내	74%이상
증감	변동없음	+1%	△1%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소방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교육공무원 : 해당없음.

⇒ 소방직 공무원은 현 비율범위 내 조정 가능, 정원만 증

③ 직급별 정원조정

○ 소방직 1,130명 → **1,243명** (증 113명)

- 소방정 10명 → **10명** (변동 없음)

- 소방령 이하 1,120명 → **1,233명** (증 113명)

※ 증 113명

소방령 +4,	소방경 +4,	소방위 +15,
소방장 +15,	소방교 +36,	소방사 +39

○ 연구직·지도직

- 연구직 : 총 정원 변동 없음. (136명)

· 연구관 20명 → **21명** (증 1명)

· 연구사 116명 → **115명** (감 1명)

- 지도직 : 변동 없음.

○ 일반직, 별정직, 교육공무원, 기능직은 변동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2,668명”을 “2,781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130명”을 “1,243명”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7%이내	21%이내	35%이내	35%이내	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이내	84%이상	26%이내	74%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4%이내	31%이내	37%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781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51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9	42	7	4	6
5급이하소계	982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20			
연 구 직 계	136	-			
연 구 관	21			18	3
연 구 사	115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243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233	-			
교육공무원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63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668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130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78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43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